


의정활동보고서



제247회 임시회(2011. 5. 2 ~ 5. 13)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하루 푸름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 5월에 제247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비회기 중이지만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말 이후 지금까지 5개여 월 동안 구제역 대책 추진과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 비록 정부 발표에 따라 백지화는 되었지만 영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활동 등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힘써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른 임시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실의에 빠져 있는 3백만 도민의 여망을 하루빨리 추스르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반드시 우리 경북을 포함한 울산, 대구 지역으로 유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유치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제반 노력에 올인하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의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의안처리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도의회와 집행부 간 공조체제 유지는 물론 경북의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 모두는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작은 보살핌과 큰 시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꿈과 희망이 샘솟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개회인사를 갈음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는 생산적이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孝

차 례

I. 개 황	167
II. 의사일정	169
III. 의안처리	175
IV. 민원처리	177
V. 본회의 보고사항	179
VI. 5분 자유발언	192
□ 김명호 의원(1차 본회의)	192
□ 구자근 의원(2차 본회의)	197
□ 이경임 의원(2차 본회의)	202

부 록

☐ 조례안	209
☐ 동의안	237
☐ 결의안	241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는 2011년 5월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5월 13일까지 12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6회의 상임위원회와 3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5월 2일(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0년 세입세출 결산감사위원 선임의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특위 위원선임 및 결의안채택 등을 의결하였다.

5월 13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미 광역취수장 붕괴로 인한 단수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하는 구자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양성평등 정책실현 촉구”하는 이경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의안처리에 있어서는 ‘경상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접수된 조례안 중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1건은 상정을 유보하였다.

또한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원안가결 하였

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결의안’을 비롯해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밖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4일부터 4월 6일간 울릉도 및 독도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일반역사왜곡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독도경비대를 위문하였으며,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8일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신공항 백지화 규탄 및 재추진을 촉구하는 범 시도민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서민경제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및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1 - 6호(2011년 4월 22일)

라. 집회일시 : 2011년 5월 2일(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1년 5월 2일 ~ 5월 13일(12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22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9	2	1	1	1	-	-	1	-	3
누 계	141	12	19	18	14	12	17	12	18	19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2(월) 14:00 (제1차)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의원(안동) ☐ 안건처리 1.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특위 구성 결의안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특위 위원 선임 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5. 13(금)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이경임 의원(비례) ☐ 안건처리(폐회)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동의안 7. 봉화 고냉지 약초 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8.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9. 경상북도 임업 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1.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 12. 경상북도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13.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 유치 재촉구 결의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5. 2(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특위구성 결의안	
5. 13(금) 10:00 (제2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5. 3(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9(월)	☐ 현지방문 ○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방폐장 방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5. 3(화) 14:00 (제1차)	☐ 안전심사 ○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행정지원국 ○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대설피해자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 봉화고냉지역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5. 4(수) 11:00	☐ 현지 확인 ○ 경북학숙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5. 4(수)	☐ 현지방문 ○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현황 ○ 문경 찻사발 축제현장 및 도자기 전시장 ○ 문경 레일바이크 체험	
5.11(수)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산림대상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사 ○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의건』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안 심사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5. 2(화)	☐ 농수산위원회 간담회 ☐ 농업인소득보전지원조례제정 청구 관련	
5. 11(수)	☐ 현지확인 ☐ 의성 신물질연구소 ☐ 의성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현장	
5. 13(금)	☐ 생활개선회 임원과 간담회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5. 3(화)	☐ 현장방문 ☐ 충남도청 이전지 견학	
5. 4(수)	☐ 현장방문 ☐ 낙동강살리기사업 제24, 28공구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5. 3(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11(수)	☐ 현지확인 ☐ 특수학교(안동영명학교, 안동진명학교) ☐ 교육청사 이전 건립부지	
5. 12(목)	☐ 현지확인 ☐ 특수학교(상희학교, 구미혜당학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5. 2(월) 15:00 (제1차)	☐ 안전심사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3(화) 10:00 (제2차)	☐ 안전심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촉구결의안 심사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5. 6(금) 10:30 (제4차)	☐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 ○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현지확인	

Ⅲ. 의안처리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9 (127)	18 (123)	15 (106)	3 (16)	(1)		(1)	2 (3)	
조 례 안	소 계	11 (64)	10 (60)	8 (50)	2 (9)	(1)		(1)	2 (3)	
	의 회 제 안	3 (16)	3 (15)	2 (13)	1 (2)				1 (1)	
	도지사 제 출	6 (36)	5 (34)	5 (29)	(5)			(1)	1 (1)	
	교육감 제 출	2 (12)	2 (11)	1 (8)	1 (2)	(1)			(1)	
규 칙 안		(1)	(1)	(1)						
예산·결산		(7)	(7)	(2)	(5)					
동의·승인		2 (14)	2 (14)	1 (12)	1 (2)					
건 의 안		(1)	(1)	(1)						
결 의 안		3 (16)	3 (16)	3 (16)						
기 타 안		3 (24)	3 (24)	3 (24)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3건)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10. 5 교육감, '10. 10. 15 교육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21 박성만 의원 외 61명, '11. 5. 13 의회운영
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1		1		1
누 계	3		3	2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 업	기 타
계	2 (29)	1 (6)	(4)	(3)	1 (11)	()	(1)	(1)	(1)	(2)
의 회 운 영										
기 회 경 제	1	1								
행 정 보건복지										
문 화 환 경										
농수산										
건 설 소 방	1				1					
교 육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29)	2 (29)	()	()	()	()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1	1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11, 동의안 2, 기타안 2)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011. 4. 18)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견	본회의 (2011. 4. 25)
박성만 의원 외 61명 (2011. 4. 20)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2011. 4. 25)
경상북도지사 (2011. 4. 2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1. 4. 25)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1. 4. 25)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동의안	"
"	붕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 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안	농수산 (2011. 4. 25)
김기홍 의원 외 9명 (2011. 4. 20)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문화환경 (2011. 4. 25)
김기홍 의원 외 9명 (2011. 4. 20)	경상북도 산림대상조례안	"
변우정 의원 외 7명 (2011. 4. 21)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
경상북도교육감 (2011. 4. 21)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교육 (2011. 4. 25)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1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1. 3. 3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 4. 18 (제3254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독도수호 특 별 위 원 회	2011. 4. 4. ~ 2011. 4. 6.	울릉도 독 도	○ 울릉도 및 독도 사업현장 확인 • 일본역사왜곡 규탄대회 및 독도경비대 위문 • 안용복기념관 건립예정지 방문 등 ※ 전찬걸 위원장 및 독도특위 위원
동 남 권 신 국 제 공항유치 특 별 위 원 회	2011. 4. 8 (금)	대구백화점 앞 광장	○ 신공항 백지화 규탄 및 재추진 범 시·도민 총 결의대회 • 신공항 백지화 반대 및 재추진 촉구 결의 ※ 박기진 위원장
예산결산 특 별 위 원 회	2011. 4. 13. ~ 2011. 4. 14.	경상북도 산림환경 연 구 원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 주요사업추진 상황 및 문제점 파악 ※ 박병훈 위원장 및 예결특별 위원
서민경제 특 별 위 원 회	2011. 4. 22 (금)	포 향 시 죽도시장	○ 전통시장 장보기 및 활성화 캠페인 전개 • 전통시장 장보기 •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등 ※ 장두옥 위원장 및 서민경제특위 위원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정책연구위원회 2011년 입법정책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1. 3. 30(수) ~ 3. 31(목)
- 장 소 : 울진군 덕구온천 호텔 세미나실
- 참 석 : 김수용 대표, 도기욱·박진현·김세호·구자근·
전인철·김말분·홍진규·김희원 의원

※ 격려 참석 : 황상조 부의장, 전찬걸·황이주·박병훈 의원

○ 포스코 연료전지 스택공장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1. 3. 31(목) 11:00
- 장 소 : 포항시 영일만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장세현·김희수·김말분·한창화
의원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사무총장 선발 심사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1. 3. 31(목) 14:00
- 장 소 : 도청 제3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의원

○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순회교육 참석

- 일 시 : 2011. 3. 31(목) 14:00
- 장 소 : 문경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시하 의원

-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식수행사 참석
 - 일 시 : 2011. 4. 1(금) 10:30
 - 장 소 : 구미시 낙동강변, 예천군 삼강주막 일원
 - 참 석 : 김대호 · 변우정 · 정상진 의원
- 창설 제43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4. 1(금) 14:40
 - 장 소 : 구미시 평생교육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구자근 · 전인철 · 김대호 · 변우정 의원
- 2011 의성 국제연날리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11. 4. 1(금) 17:00
 - 장 소 : 의성군 종합운동장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나현아 · 이왕식 의원
- 대구 연구개발특구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1. 4. 4(월) 17:00
 - 장 소 : 대구 세인트웨스턴호텔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제66회 식목일 및 낙동강 희망의숲 조성나무심기 참석
 - 일 시 : 2011. 4. 5(화) 10:30
 - 장 소 : 상주시 도남동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한재석 · 강영석 의원

- 제8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4. 6(수) 11:00
 - 장 소 : 대구 엑스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39회 보건의 날 및 제11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1. 4. 7(목) 13:30
 - 장 소 :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김기홍 의원
- 의원연구단체(청사초롱) 고령대가야 체험 축제 참석
 - 일 시 : 2011. 4. 8(금) 10:00
 - 장 소 :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일원
 - 참 석 : 정상진 대표, 전인철·나기보·배수향·변우정·박병훈·이정호 의원
- ※ 격려 참석 : 송필각 부의장, 곽광섭 의원
- 안용복 기념관 건립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1. 4. 8(금) 15:00
 - 장 소 : 울릉군 북면
 - 참 석 : 이용진 의원
- 근로자 가요제 참석
 - 일 시 : 2011. 4. 8(금) 18:40
 - 장 소 :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한창화 의원

- 제20회 경주 벚꽃 마라톤대회 참석
 - 일 시 : 2011. 4. 9(토) 08:00
 - 장 소 : 경주시 보덕동사무소 정문
 - 참 석 : 이상효 의장, 최학철 의원
-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세미나 및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1. 4. 11(월) 11:00
 - 장 소 : 포항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한창화 의원
- 웅진 폴리실리콘(주) 공장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1. 4. 13(수) 10:30
 - 장 소 : 상주시 청리면
 - 참 석 : 강영석 의원
- 제32회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1. 4. 13(수) 14:30
 - 장 소 : 경주시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박병훈 · 최학철 의원
- 경상북도 여성기업인 일자리창출 촉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1. 4. 14(목) 11:00
 - 장 소 :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국제사이클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1. 4. 15(금) 09:30
 - 장 소 : 구미시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박태환 의원
- 『투르 드 코리아 2011』 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4. 15(금) 10:00
 - 장 소 : 구미시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전인철 의원
- 제9회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4. 15(금) 11:00
 - 장 소 : EXCO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청도 소싸움 축제 참석
 - 일 시 : 2011. 4. 15(금) 14:00
 - 장 소 : 청도군 상설소싸움경기장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하수·박권현 의원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1. 4. 15(금) 14: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박병훈 의원

○ 국회의장 면담

- 일 시 : 2011. 4. 15(금) 15:00
- 장 소 : 국회의장 접견실
- 참 석 : 이상효 의장

○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참석

- 일 시 : 2011. 4. 15(금) 15:00
- 장 소 : 도의회 세미나실
- 참 석 : 김창숙 의원

○ 국제라이온스 경북지부 연차대회 참석

- 일 시 : 2011. 4. 16(토) 14:00
- 장 소 : 경주시 황성공설운동장
- 참 석 : 박병훈·최학철 의원

○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참석

- 일 시 : 2011. 4. 16(토) 14:00
- 장 소 : 상주시 북천시민공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이경임·김명호·한재석·강영석 의원

○ 2011 범도민 기초질서 선진화 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1. 4. 17(일) 11:00
- 장 소 : 고령군 생활체육공원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촉구 성명서 발표
 - 일 시 : 2011. 4. 18(월)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2011 글로벌 새마을포럼 참석
 - 일 시 : 2011. 4. 19(화) 10:00
 - 장 소 : 경주시 현대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4. 19(화) 15: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구자근 의원
- 2011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1. 4. 20(수) 10:00
 - 장 소 : 구미시 금오공고
 - 참 석 : 이상효 의장, 김대호 · 변우정 · 박태환 의원
- 초중고 전국 핸드볼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1. 4. 20(수) 10:00
 - 장 소 : 구미시 선산체육관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1. 4. 20(수) 11:00
- 장 소 : 구미시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전인철 · 김대호 · 변우정 의원

○ 장계향 사단법인 설립추진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1. 4. 20(수) 14:00
- 장 소 : 김천시 종합사회복지관
- 참 석 : 배수향 의원

○ 꽃매미 방제 농촌일손돕기 참석

- 일 시 : 2011. 4. 21(목) 10:00
- 장 소 : 상주시 모서면 대포리
- 참 석 : 강영석 의원

○ 고유가 극복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1. 4. 21(목) 11:30
- 장 소 : 경북교통연수원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변우정 의원

○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1. 4. 21(목) 12:00
- 장 소 :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구자근 · 이경임 · 박태환 · 김대호 의원

○ 제13회 수산업경영인대회 및 어업 지도선 취항식 참석

- 일 시 : 2011. 4. 22(금) 11:00
- 장 소 : 포항시 구룡포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이정호·한창화 의원

○ 어업지도선 경북 201호 명명식 참석

- 일 시 : 2011. 4. 22(금) 14:00
- 장 소 : 포항시 구룡포항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한창화 의원

○ 경북 합기도 연맹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1. 4. 23(토) 09:30
- 장 소 : 구미시 선산체육관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제3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배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1. 4. 23(토) 11:00
- 장 소 : 김천시 실내체육관
- 참 석 : 배수향 의원

○ 경상북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4. 25(월) 14: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김하수·김종천 의원

- 2011 경북기능 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 일 시 : 2011. 4. 25(월) 14:00
 - 장 소 : 구미시 금오공고
 - 참 석 : 김대호 · 변우정 의원

- 제24회 장애인종합예술제 경북예선대회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1. 4. 25(월) 14:30
 - 장 소 :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장세현 · 권영만 · 채옥주 · 김말분 · 박병훈 · 한창화 의원

- 2011 전국 중소기업 CEO 한마음 대회 참석
 - 일 시 : 2011. 4. 28(목) 17:40
 - 장 소 : 포항시 실내체육관
 - 참 석 : 채옥주 · 한창화 의원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기원 한마음 축제 참석
 - 일 시 : 2011. 4. 28(목) 19:00
 - 장 소 : 경주시 축구공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이사 환영만찬 참석
 - 일 시 : 2011. 4. 28(목) 20:00
 - 장 소 : 경주시 현대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4. 29(금)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영식 의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1. 4. 29(금) 17:30
 - 장 소 : 제주도 롯데호텔
 - 참 석 : 이상호 의장
- 2011년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4. 30(토) 11:00
 - 장 소 : 김천시 탑웨딩타운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배수향·나기보 의원
- 2011 세계태권도대회 개막식 및 선수단 환영만찬 참석
 - 일 시 : 2011. 5. 1(일) 17:00
 - 장 소 : 경주시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호 의장, 김영기·이달·최우섭·장경식·
김세호·정영길·한혜련·박병훈·배수향·
이정호·최학철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1년 5월 2일(월)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새로운 도청소재지 미래환경 관련>>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미래 환경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제 곧 역사적인 도청 신도시 건설 사업이 시작됩니다. 토지보상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동시에, 도청과 의회 신청사 건축공사가 착공됩니다. 이어서 신도시 전체에 대한 밑그림 설계가 이루어지면, 약 80여 개 기관들과 주거단지가 들어설 부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신도시의 기본설계는 관계 전문가들이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숙고해서 잘 만들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신도시 외곽의 미래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그림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본 의원은 2014년 7월 검무산 아래에서 개청하게 될 도청 신도시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도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철갑이 된 기성도시와는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현대성과 전통성이 적절히 어우러지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꾸며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계획에 33.7%라는 전국 최고의 녹지 비율을 할애해 둔 것은 고무적인 일로서 평가할만합니다.

하지만 신 도청소재지가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동-예천 지역의 농축산업 양식을 본질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신도시 주변의 농촌이 기존의 농업의 틀을 고수하는 한 친환경 생태도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둘러싼 안동-예천지역의 농촌 일대를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하고 생태마을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점철된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산물 전량을 계약재배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친환경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장형 축사에 초밀식으로 입식하여 항생제 사료로 비육생산에만 몰두했던 종래의 무자비한 축산관행을 버리고, 방목과 친환경 조사료를 기본으로 하는 선진형 축산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건설하여 경종과 축산농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종농가엔 친환경 퇴액을 제공하고 축산농가엔 친환경 조사료를 제공하는 경축순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매탄가스를 활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녹색에너지사업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친환경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전통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외식관광사업도 병행하여 추진케 한다면, 단순 친환경농업인 1차 산업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6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생산과 가공,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선순환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농가에는 고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장차 신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쯤이면, 경북 도청소재지가 명실공히 친환경 녹색도시의 모델, 최고의 생태마을 체험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더불어 도청소

재지와 생태마을을 경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 오는 새로운 명승지가 될 것입니다.

낙동강 700리 최상류의 수질을 지키고, 세계문화유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라도, 신 도청소재지의 농축산업을 온전히 친환경 생태 농축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북 농정의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안동과 예천에서는 지난 겨울에 겪은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청정 이미지를 회복하고, 경북축산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야심찬 목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천과 안동의 농업지도자들은 우리 축산업을 기존의 축산패턴에서 탈피하여 친환경농업과 연계되는 친환경 생태축산시스템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는 농약과 화학비료로 점철된 관행농업의 폐해를 극복하고 친환경농업으로 되돌리는 새로운 농촌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호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찾아오는 고객들과 미래 세대들이 두 눈으로 직접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친환경의 온전한 표본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논에서는 다시 메뚜기와 미꾸라지, 우렁이가 시골벽적하고, 소들이 풀을 뜯는 야산 언덕엔 쇠똥구리가 기어 다니며, 참나무 기둥에서는 사슴벌레와 풍뎅이가 웅웅거리고, 저녁 어스름이 짙어지면 반딧불이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완벽한 친환경 생태 농촌으로 환원시키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신도청시대는 안동 - 예천의 고즈넉한 시골마을, 바로 그런 친환경 농촌의 한 가운데에서 개막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사 뒤 검무산에서는 쉼 새 없이 온갖 새들이 날아들고, 의회 청사 앞 공원에서는 갖가지 곤충들을 쫓아다니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리며, 그들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흐르는, 바로 그런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도청소재지를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그 선두에 안동과 예천의 친환경농업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제역 극복의 선봉에 섰던 예천과 안동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친환경농업인들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의 해안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1년 5월 13일(금)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구자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구미광역시취수장 붕괴로 인한 단수사태와 관련한 대책 촉구>>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구미광역시취수장의 가물막이 붕괴로 인하여, 5일간 단수로 인한 고통받은 구미시민의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를 포함한 도의원 모두는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의 정비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단수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구미, 김천, 칠곡 지역의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입니다.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경 구미시 해평면 광역취수장 인근에

위치한 임시보 가물막이 일부가 유실되어, 하천 수위 저하로 7시경부터 취수가 중단됨으로써, 구미시를 비롯한 김천시와 칠곡군으로 배분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미시민과 김천, 칠곡의 49만 7천명(구미시 391천명, 김천시 8천명, 칠곡군 98천명)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에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하고, 소방차와 급수차 등 비상급수차량을 동원하고, 생수를 지원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였을 뿐입니다.

단수사태가 5일간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끊이지 않았으며, 구미시민을 비롯한 공단내 기업체들은 피해보상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보는 주요 시각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을 깊게 준설하여 유량과 유속이 예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여 가물막이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붕괴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가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6m짜리 시트파일로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에서 가물막이 보강공사를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음에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이어지고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전문성을 의심해야 하는 것인지, 안일한 대응으로 치부해야 할 것인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설마 하는 허술한 취수관리'가 시민들과 기업체에 큰 고통과 피해로 이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대응과 무대책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5월 8일 새벽에 발생하였는데, 경상북도에서는 5월 10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민과 기업체들은 2일동안이나 단수의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고 난 후 경상북도의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욱기가 막힌 일은 늦장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음에도 단수 사태는 3일동안 더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책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단수로 고통 받은 구미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대책회의였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행정조직에는 물관리과와 안전대책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따른 단수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형식적인 행정조직이었습니다. 사고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단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아나운서의 말처럼 일본의 쓰나미에는 적극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던 경상북도가 정작 도민이 단수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는 생수 1병 지원에도 인색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300만 도민을 위한 경상북도 행정의 현실입니까?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서, 명확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하여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상북도의 위기관리시스템 정비를 촉구합니다. 위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단시간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은 위기관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 구제역 확산으로 겪은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었음에도 위기관리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중

호우와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신종바이러스와 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미래에 다가올 위기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서는 단수로 고통받은 구미시민과 피해를 본 도내 기업체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조업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과 신속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년 5월 13일(금)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경임 의원(비례) ◎

<<양성평등 정책실현 촉구>>

친박연합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조직이 '여성적
리더십'을 보다 더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산업시대에는 남성적인 육체
적인 힘보다는 여성이 지닌 정신적인 능력, 창의력과 다양성,
배려와 포용, 유연성이 시대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3W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기후-Weather, 웹-Web,
여성-Woman)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조사한
'여성권한 척도(GEM)'¹⁾에서 우리나라는 108개국 중 68위이며,

1) 정치·사회·경제 분야 등에 대한 여성 참여도를 지표화한 것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격차 지수(GGI)'는 134개국 중 104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경북도의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지표들을 보면, 200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평등 종합지수에서 12위이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19.5%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조사한 '성평등 정치지수'는 1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8월부터 시행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 근무제 이용 공무원 현황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은 5,447명, 서울시 140여 명, 경기도와 전라남도 각각 100여 명, 부산시와 대전시가 20~3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북도에서는 1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수 전체 418명 중 여성은 11명(2.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2009년부터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교육현황에서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교육참가율은 418명 중 18명으로 4.3%만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와 결과들을 보면, 경북도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부문에서 과거보다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조직 속에서 겪는 차별적 여건과 문화는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에서도 나름대로는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들이 여성들의 조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공약에서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용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공약이 여성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는지? 아니면 낙후된 지역의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소신에 찬 공약이었는지?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실천을 기대합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게 여성이 행복한 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9건
- 동의안 : 2건
- 결의안 : 3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 산림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임업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산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단체부문

2. 개인부문

②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산림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②수상후보자는 산림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시장·군수와 도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위원의 자격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산림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림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산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 및 산촌진흥계획 등)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적·환경적 특성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임업인의 복지증진과 전문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 유관기관·단체,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임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 및 임업인은 임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사업 진흥구역 지정) ①도지사는 산림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권역별로 산림사업 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구역에서 시행하는 산림 소득·생태관광시설·임도 등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산물 판로개척) 도지사는 유망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 임업인 양성) ① 도지사는 임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업경영인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는 임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업인의 역할) 임업인은 임산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먹을 거리를 생산하고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영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산촌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환경해양산림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업 및 산촌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업 및 산촌진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 기반조성 및 산촌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사항
4. 임업기술과제 선정 및 시상결정에 관한 사항
5. 임산물 수출, 가공, 유통,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3. “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이하 “공익신고”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신고기한)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일로 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등) ①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는 교육청 감사 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 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전화 등으로 신고 후 서면(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 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사실조사) ①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서 제외한다.

1. 감정·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 등) ①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공익신고 및 보상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제9조에 따른 위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위촉 해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사 등 신분상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교육감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결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이 확인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외부위원은 청렴한 자로서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부교육감, 감사담당관,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제14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징계 등 필요한 조치) ①교육감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청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부조리 행위부터 적용한다.

【 별 표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12조 관련)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 · 환수결정액	· 10%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 알선 · 청탁의 대가인 금품 · 향응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알선 · 청탁행위 신고	· 3백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 하는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 으로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 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백만원 이내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가. 금품 · 향응 수수액은 감사 · 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
으로 한다.
- 나. 추정 · 환수결정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 급			
신 고 내 용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공익신고서 접수증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신 고 자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익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인사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 소			
이의신청 사 유	※ 이의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교육감(감사관) 귀하				

공익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신 청 자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이의신청 신고접수 처리대장(제7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일	신청자	인사 등 불평등 조치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비고
			조치일	조치내용			

[별지 제4호 서식]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 대장(제12조제4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및 환수			비고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내용	지급일 (환수일)	지급액 (환수액)	내 용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고,
제3장제8절(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제3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5-41번지에
둔다.

제32조(원장) 수련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을 통한 심신수련 활동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3.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제13항, 14항을 삭제한다.

제9절 “산림생태과학원”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한다.

제64조 중 “경상북도산림생태과학원”을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으로, “산림생태과학원”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한다.

제65조 중 “산림생태과학원”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한다.

제66조 중 제15항을 제17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15항, 제16항을 신설한다.

15. 수목원관리소의 관리·운영

16. 수목장림 설치 및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새경북기획단장”을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한다.

②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1. 조직 및 임무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도청이전추진단”을 “도청이전추진본부”로 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이외의 부분 중 “4,791”을 “4,7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06명”을 “1,907명”으로 한다.

별표 2 1. 일반직공무원 중 “7명(4급 1, 5급 1, 6급 1, 7급 4)”를
“8명(1급 1, 3급 1, 5급 1, 6급 1, 7급 4)”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별 “관광개발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공인의 글씨 및 규격)”을“(공인의 글자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24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일시적 2차량 보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동 의 안

-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동의안
-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이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안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주요내용

- 감면대상 : 2010년 10월부터 과세기준일(2011. 6. 1)
현재까지 구제역·AI로 가축 살처분 농가 및
대설 피해 건축물 소유자
- 감면세목 :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
- 감면내용 : 2011년분 면제(100%)
- 동의안의 제목과 주요 내용 중 “AI”를 “조류인플루엔자”로
한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5월 13일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주 요 내 용

○ 재산의 취득

- 토 지 : 78필지(179,113㎡), 3,017,222천원
- 건 물 : 9건(4,710㎡), 4,431,500천원
- 기 타(부대시설공사) : 4,551,278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천원)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				
토지 건물 기타		78필지 9건	179,113 4,710	3,017,222 4,431,500 4,551,278			
1 (토지)	전, 답 대지 임야 등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14-15번지 외 77필지	179,113	3,017,222	2011년 ~ 2012년	봉화고냉지약 초시험장 이전	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2 (건물)	대지, 답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14-17번지 외 8건	4,710	4,431,500	"	"	시험장 신축
3 (기타)	전, 답 대지 임야 등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14-15번지 외 77필지		4,551,278	"	"	부대시설 공사 등

○ 재산의 처분

- 토 지 : 12필지(82,038㎡), 3,667,388천원
- 건 물 : 7건(2,909.96㎡), 2,124,192천원
- 기 타(부대시설 등) : 1,282,322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천원)	처분 시기	처분 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				
토지 건물 기타		12필지 7건	82,038 2,909.96	3,667,388 2,124,192 1,282,322			
1 (토지)	대지, 답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543번지의 11필지	82,038	3,667,388	2011년 ~ 2012년	봉화고냉지 약초시험장 이전	산림청, 봉화군 매수
2 (건물)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543번지의 6건	2,909.96	2,124,192	"	"	산림청 매수
3 (기타)	부대시설 등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477-2번지의 9건		1,282,322	"	"	"

■ 결 의 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결의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1. 5. 2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제안이유

-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월)·시행(4월), 6월에 입지선정 예정인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는 기초과학비즈니스 융합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신
성장 산업임.
- 경상북도를 비롯한 울산·대구는 기초과학 연구기반, IT 산업
기반, 정주여건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과학벨트의 목적
실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G)·울산(U)·대구(D)를
아우르는 3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

3. 내 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추천으로 한다.
- 위원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활동기간 이전에 유치가 확정되면 특위는 종료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한다.
-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의안발의 등 의정활동 전반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 결의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 진흥으로 우리 경제와 기술의 창조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대한 국가발전전략이다. 그러나 지금,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양상들을 보면 대한민국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공정한 원칙과 절차는 사라지고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적 정치논리만 점철되고 있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더군다나 과학벨트위원회가 발표한 입지 평가지표에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바뀐 마당에 접근성 등을 입지평가기준으로 고려하는 등 비상식적 항목을 내포하고 있음은 국책사업결정과정의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할 과학벨트의 필요성은 이미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기반을 갖추고 있고 국제수준의 정주여건과 편리한 접근성, 과학기술의 비즈니스 창출기반, 부지확보 용이 및 기반안정성을 검증받은 경북·울산·대구(GUD) 유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300만 경북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하나. 과학벨트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과학기술의 진정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법적절차와 기준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라.

하나. 입지평가시 비교대상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학벨트는 거점 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권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해야 한다.

하나. 우리 경북은 그동안 정치적 역차별은 물론 국책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아왔음에도 원전, 방폐장 등 국가의 큰 짐을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떠맡아 왔다.

그러나 이번 과학벨트 입지에서도 단지 경북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역차별 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직시하라.

하나. 과학벨트입지에 국가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는 실종되고 일부 정치권의 편협한 논리에 300만 경북도민은 분노한다. 경북의 탁월한 입지여건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일관할 경우 경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더불어 3개 시·도민 여론을 결집하여 대정부 전면투쟁마저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1. 5. 13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정활동보고서

(제245회·제246회·제247회 임시회)



2011. 6 인쇄 / 2011. 6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602-5284

FAX : 602-5140



<비매품>